방송통신위원회
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9. 3. 7.

방송통신위원회

목 차

Ⅰ. 2018년 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3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4

1. 방송의 공공성 · 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····· 5

2.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····· 8

3.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····· 11

4.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 · 유통 기반 확충 ····· 13

5.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 ····· 16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····· 19

I. 2018년 성과와 평가

1. 주요 성과

□ 방송의 공적 책임·공공성 제고

○ 사회적 논의기구인 '방송미래발전위원회'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편성·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 국회 제출('18.12월)

※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,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안

○ 엄정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이행점검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

※ 조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(KBS 등 7개사 '18.12월, 채널A·MBN '19.1월)

□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환경 조성

○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편에 외주제작 편성 의무를 부여하고 '종편PP 의무송출개선 협의체'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('18.12월)

○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'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' 운영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('18.12월)

○ 중소방송인 OBS와 유료방송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재송신 협상을 적극 중재하여 타결

□ 전 국민 미디어 역량 증진 및 참여 기회 확대

○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실시('17년 20.7만명 → '18년 25.3만명) 및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충(경기센터 구축), 소외지역에 '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' 이용 확산(245개소 방문, 13,390명 이용)

○ 지역밀착형 매체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'18.12월)

□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

○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율 '독립창작자 인권선언*' 선포('18.11월) 및 외주인력 안전 강화를 반영한 방송평가규칙 개정('18.11월)

*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,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등 천명

○ 방송사(지상파, 종편, 주요PP)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범부처 합동 현장 실태점검 실시('18.11월)

□ 안전한 통신·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

○ 개인·위치정보의 엄격한 보호 아래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 동의방법 확대('18.5월), '사물인터넷(IoT) 개인정보보호 수칙' 마련('18.9월),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완화('18.3월)

○ 불법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삭제(133,257건) 및 상습 유포자 수사의뢰(333개 ID) 실시,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삭제의무 부과 및 긴급통신심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('18.12월)

□ 이용자 피해·불편사항 적극 발굴·개선

○ 연락처 변경,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'통신요금 연체 알림서비스' 시행('18.1월)

○ 인터넷 개인방송의 과도한 아이템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'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' 제정('18.11월)

2. 보완 과제

□ 신유형 융합미디어에 대한 법제도 정비

○ OTT 등 융합서비스 확대와 글로벌 미디어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,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진

□ 자유롭고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한 제도 개선

○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으나,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늦어지며 제도적 뒷받침 지연

□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및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

○ AI·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, 불법촬영물·도박·저작권침해 콘텐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

Ⅱ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□ 미디어 소비가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며 **기존의 방송 미디어 성장이 둔화**되고 통신·인터넷도 가입자 포화 등 **성장 동력이 약화**되는 한편, 글로벌 사업자의 진입은 확대되어 시장의 **경쟁**은 **격화**

※ (방송산업 매출액) '16년 17.2조원 → '17년 17.4조원 → '18년 17.8조원(추정)
(통신산업 매출액) '16년 38.0조원 → '17년 38.3조원 → '18년 37.7조원(추정)

□ 5G 상용화,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확산, IoT·AI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**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신산업·서비스 활성화**

□ 다매체·다채널 시대에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, 역설적으로 **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는 부족**하고 AI 등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로 **이용자 피해도 복잡·다양화**

※ 자극적인 방송콘텐츠,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, 음란물 및 성범죄물 등의 확산

2. 정책 방향

□ 미디어가 여론형성의 장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**방송·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, 사회적 책임을 강화**

□ 방송통신시장 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타파하고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**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생과 포용의 생태계 조성**

□ 방송통신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된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**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,** 각종 피해와 위험으로부터 **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**

□ 전후방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, 창의력 기반의 직업 창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**방송콘텐츠** 분야의 **규제 합리화 및 활성화 지원**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비 전

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

정책 목표	주요 업무
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	① 방송의 역할 재정립 ② 방송의 공정성·공익성 제고 ③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
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	①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②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③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④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 강화
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	①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②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③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
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·유통 기반 확충	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③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 ④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
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	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②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③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

1 방송의 공공성 · 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

□ 개 요

○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할수록 전통적 방송매체가 수행해야 할 공정성과 공공성, 사회적 책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, 방송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방송의 역할 재정립

○ **(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)** 공영방송 이사·사장 선임절차를 합리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**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구조** 마련

- **국민추천이사제,** 사장 선임시 **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**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

○ **(수신료 감면제도 개선) 체납 가산금**을 **인하**(5→3%)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**면제절차**를 **간소화**하며 **선납 할인 고지 의무화**(시행령 개정, 3월)

-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 지원(법 개정안 발의 '19.2월)

o **(중장기 규제체계 정비)**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'**방송제도개선 추진반**(가칭)'을 구성·운영(3월~)

-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강화하되, 민영방송은 활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방송통신 제도개선 방안 마련

※ 관계부처(과기정통부), 정책연구기관, 방송·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공민영 방송 규제체계와 방통융합 제도개선 등 논의

② 방송의 공정성 · 공익성 제고

○ **(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제도 개선)**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환경변화에 대응한 **중장기 경영전략**과 **공적책임 이행실적** 등을 **중점 심사**

- 지상파·종편·보도채널 재허가·재승인 시 부가한 **공정성 확보, 콘텐츠 투자 조건** 등을 철저히 **점검**(지상파 6~7월, 종편PP 2~8월)

-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(3~5년) 차별화, 프로그램 균형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**재허가 제도개선**('19년 심사부터 적용)

※ **('19년말 재허가)** 지역MBC·지역민방 21개, 라디오 12개 / **('20년 재승인)** 종편 4개, 보도 2개

○ **(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)** 방송의 제작·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**방송관계법 개정** 적극 지원

- 방송사측·종사자측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, 편성·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 기능 강화 및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

○ **(공정성 평가 강화)** 방송평가 시 **방송심의규정 위반** 및 **오보 관련 확정판결 등 반영 확대**, 종편PP의 프로그램 질 평가 확대

- 재난방송 편성 관련 지상파방송 평가 강화, 유료방송 평가항목 신설

③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

○ **(신속한 재난방송 구현)** 재난·재해에 대비하여 재난방송이 국민에게 **신속하고 정확**하게 전달되도록 **수신음영지역 해소 추진**

- **TV 자막방송**을 전달하는 통신사업자를 **다원화**하여 안정적 방송 제공

- **지하 공간**(3,900여개 터널·지하철 등) **전수 조사**를 통해 수신환경 개선 및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**터널 진입부 비상방송** 실시

○ **(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)**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, 자금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 지원(총 72개사)

- **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**은 **추가 배점**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

○ **(공익광고 제도개선)** '비상업적 공익광고'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**공익광고 편성확대*** 등 추진

* 지상파TV(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)와 그 외 방송사업자(1000분의 0.5 이상) 간 의무편성 비율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 등 추진

○ **(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)** 방송언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규정을 개정하고, 관계자 교육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화

<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>

방송언어 실태조사		심의규정 개정		중점 모니터링
진실 왜곡, 혐오·차별, 방송언어 사용 실태	⇨	가이드라인 및 방송심의 규정	⇨	허위·과장 등

자율규제 강화 (심의 책임자 회의, 방송관계자 교육, 방송언어 캠페인, 우수프로그램 시상 등)

○ **(남북 방송통신 교류)** 방송통신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**국제 콘퍼런스, 통일방송프로그램* 제작·방영 실시**(12월)

* 다양한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지상파TV 뿐 아니라 라디오 등으로 매체 확대

- 남북간 방송통신정책 및 민간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**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** 추진

○ **(지역방송 제작·유통 지원)** 지역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**전문인력 교육을 강화**하고, SNS 및 인터넷 포털용 **신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** 확대

-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콘텐츠 마켓 참여기회 확대 등 **수출형 프로그램 지원**('19년 예산 10억원)

②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

□ 개 요

○ 방송통신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됨에 따라 남녀노소, 장애인 등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·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, 동시에 복잡·다양해지는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

○ **(미디어교육 강화)**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제작·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미디어 주권 강화

※ 프로그램제작 교육, 제작실습, 비판적 이해능력 제고 등 단계별 미디어교육 실시

- 특히, 어린이·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

※ 미디어교육·체험 인원 확대 목표 : ('18년) 25만명 → ('19년) 28만명

○ **(미디어센터 확대)**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**경기**(7월), **충북, 세종**(12월) **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**

※ '18년 7개 → '19년 10개 → 전국 17개 광역권 구축

-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**'미디어 나눔버스' 확대 운영**('18년 2대→'19년 4대)

<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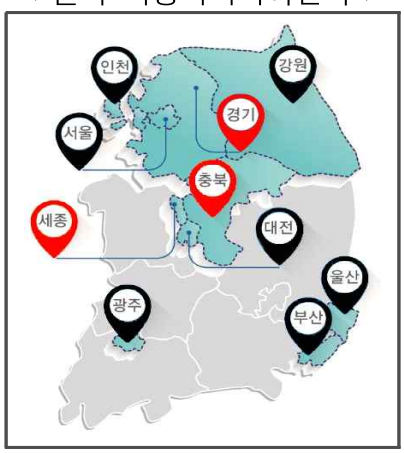

○ **(미디어교육 추진체계 정립)** 방송은 물론 통신·인터넷을 포괄하는 **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 정립**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- **「미디어교육 지원법」**(신경민의원 발의, '18.5월) **제정 지원**을 통해 방통위·문체부·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

②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

○ **(지역밀착형 미디어 활성화)**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**마을미디어교육**을 **확대**('18년 50개 → '19년 70개 마을) 하고, **공동체라디오 활성화**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(3월)

○ **(국민의 방송참여 확대)** 방송에 국민의 의견이 **실질적으로 반영**될 수 있도록 **시청자 참여프로그램*의 점진적 확대**를 유도

<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 >

2017년	⇨	2018년	⇨	2019년 목표
88개 방송사		92개 방송사		94개 방송사

* 시청자가 직접 기획·제작한 프로그램으로 KBS·공동체라디오는 의무적으로 편성·방송

③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

○ **(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)**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등 **취약계층**에게 음성안내·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**맞춤형 TV 우선 보급**('19년 15,000대)

※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누적 보급률 : '19년 80%, '21년 100% 달성

○ **(장애인방송 제작지원)** 방송사의 장애인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장애학생, 발달장애인 등 시청대상별 전용 콘텐츠 제작·보급

- 자막, 수어·화면해설 등 **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**(약46억원)

-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**교육프로그램**(자막·화면해설 3,900여 편) 및 **발달장애인**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**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·보급**

○ **(모바일 방송 시청 지원)** 스마트 기기에서 **AI 기술을 활용**하여 **음성을 자막·수어로 자동 변환하는** 서비스 개발 착수(5년 내 상용서비스)

④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

○ **(지능정보시대의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)**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강화 등 **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마련**(2월)

- AI·데이터 활용 증대에 따른 **이용자 권리 및 보호원칙**을 **선포**(6월)하고 **'AI·데이터윤리혁신센터**(가칭)*' 설립 추진

* 알고리즘 투명성·공정성 확보, 이용자보호 검증 거버넌스 연구, 정보웹사이트 구축 등

○ **(통신재난 대응 개선)**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**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**하고, 통신사업자의 **장애 사실 고지 의무화**(시행령 개정, 6월)

- 통신사 관리책임 강화 및 보상 확대를 위해 통신사의 고의·중과실이 있는 경우 **배상책임을 강화**하는 제도 도입 추진(6월)

○ **(이용자 피해구제 실질화)**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·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「**통신분쟁조정제도**」 **도입·시행**(6월~)

※ 통신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재정제도(90일)에 비해 처리기한 단축(60일)

- **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** 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(입법지원, 연중)

○ **(결합상품 해지 간소화)** 결합상품 사업자 전환시(가입·해지) 신규 사업자에게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가 자동해지 되도록 **원스톱 사업자 전환시스템 구축계획 수립**(12월)

('18년) 개선방안 마련	⇨	('19년)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	⇨	('20년) 시스템 구축·적용

○ **(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)** 사업자의 **손해배상책임보험** 가입 등을 의무화(6월)하고,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**국가자격제도**('20년 시행)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**과징금 제도 도입**(위치법 개정 지원) 추진

-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 **진입규제를 완화**(허가→등록)

③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□ 개 요

○ 열악한 외주제작시장 등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**상생환경을 조성**하는 한편, 국내외 사업자 및 방송 매체간 **규제 불균형을 해소**하여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

○ **(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환경 조성)**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, 계약 절차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된 「**외주제작 가이드라인**」 **시행**(4분기)

- **외주제작비 현실화**(재허가조건) **이행 점검**을 실시하고, 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**방송현장의 안전 강화조치** 유도(방송평가 반영)
- 공정한 외주거래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자율 '**콘텐츠 상생협의체**' 구성·운영

○ **(ICT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구축)** 5G 상용화, 플랫폼사업자 영향력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지행위 등 **사후규제체계 정비**(2월~)

※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(3~11월), 통신법제 정비 연구반(2월~) 운영

- 현행 기간통신사업 중심의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생태계 참여자 간 (기간↔부가통신, 대형CP↔중소CP 등) 불공정행위 사례 분석 및 법제 정비

○ **(불공정행위 점검 강화)**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 시장과 단말기유통·방송 분야에서의 각종 부당 거래행위를 중점 점검 및 제재

- **(플랫폼 분야)** 앱마켓의 중소 앱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, 미디어 콘텐츠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
- **(단말기유통 분야)** 유통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·강요, 온라인 불법판매 유도행위 등
- **(홈쇼핑 분야)** 유료방송사의 채널 번호 부당 변경, 홈쇼핑사의 납품업체 편성 취소 등
- **(방송광고 분야)** 방송광고판매대행사와 중소지상파 간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등

○ **(지상파 재송신 합의 유도)** 지상파-유료방송간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, 대가검증 협의체 등을 통한 합의 촉진

②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

○ **(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)** 인터넷 기업(CP)의 망 이용 관련 **불공정 행위 규제근거 신설**(법 개정안 마련, 6월) 및 **'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'** 마련(6월)

○ **(개인정보 분야 규제집행력 강화) 국내대리인 지정**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·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**구체화**(시행령 개정, 3월)

-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**정부 간 협력채널** 마련

○ **(불법 정보·서비스 규제 강화)**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(시정명령 3회 위반 등)할 경우 **서비스의 임시중지**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(2월~)

-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* 시행('19.6월)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**금지행위 점검 강화** 및 **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****

*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·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

** '18년 앱마켓사업자 최초 평가, '19년 유튜브,·페이스북 등 SNS사업자까지 확대

③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

○ **(종편PP 규제 합리화)** 종편PP의 매출 및 시청률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칭규제를 개선하고 규제합리성 제고

- 종편PP를 **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**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(과기정통부에 협조)

- 종편PP에 대해 전체방송시간의 35% 이내의 **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**(고시 개정, 6월) 및 **분담금 징수율**을 합리적으로 **개선**(고시 개정, 12월)

○ **(IPTV 자료제출 규정 신설)**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유료방송사(IPTV, SO)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(개정안 마련, 4월)

④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·유통 기반 확충

□ 개 요

○ 심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고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,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 재원 확보 및 온·오프라인 해외진출 기반 마련,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비 등 생태계 전반의 개선 추진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

○ **(방송광고제도 개선)**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에 대응하여 광고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 기반 마련

- **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**과 **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**를 추진하고, **시청권 침해 최소화**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

○ **(협찬제도 개선)** 협찬의 투명성 제고와 시청권 보호 등 협찬 제도 개선을 통해 **협찬시장의 건전화** 유도

- **협찬 정의 조항** 신설, **허용범위** 및 세부기준 명확화, 일정 금액 이상의 협찬고지 의무화 등 **법적 근거 마련**(개정안 국회제출, 12월)

○ **(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)**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기간 조정(5년→3~5년) 및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추진(방송광고 →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등)

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

○ **(공동제작협정 확대)**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**신남방·신북방 거점국가**들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

- ASEAN 10개국 중 시장규모 및 한류 파급 정도가 큰 **주요3국(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)**과 우선 협정체결 및 **터키·러시아** 등과 신규 추진

○ **(해외시장 조사)** 국내방송사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한류 **주요시장 현황 조사** 및 국내외 **전문가 워킹그룹 pool 구성·운영**

- 공동제작협정 대상국(태국, 인도네시아, 캐나다 등) 중심으로 **시장·규제 현황 조사**(연중) 및 한류 활성화국 대상으로 **한류통신원 운영**(9월~)

○ **(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)** 국내외 사업자 간 **실질적 매칭 기회**를 제공하고, 한류 방송콘텐츠의 **홍보 및 판로 기회 확대**(6월)

③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

○ **(OTT 서비스 제도화)**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 지원

- OTT 서비스에 **최소한의 규제**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

※ 의원발의 : 방송법·IPTV법 개정안('18.10월 **변재일**), 방송법 개정안('19.1월 **김성수**)

- **방송·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** 구성 등을 통해 방송·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

※ SKB와 지상파방송 3사 공동으로 방송·통신 OTT 연합 MOU 체결('19.1월)

< 주요 OTT 제공 유형 >

구 분	사업자	비고
① 실시간+VoD (푹(Pooq) 형)	푹(지상파 3사 중심), 티빙(CJ), 옥수수(SKT), 올레TV(KT), LTE비디오포털(LGU+) 등	유료 무료 서비스 병행
② VoD 제공 (넷플릭스 형)	넷플릭스, 아마존, 왓차플레이 등	
③ 동영상 공유·1인 방송 (유튜브 형)	유튜브, 아프리카TV(실시간포함), 네이버TV 등	

○ **(지상파 UHD 재정비)** ‘15년 수립한「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」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

- 방통위,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‘UHD 추진점검 TF’를 구성·운영하고 UHD 전환시기 및 편성비율 현실화 방안 등을 재허가에 반영

④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

○ **(기업 간 인수·합병 시 공공성 확보)** 미디어 기업 간 **자발적 인수·합병 논의**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·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, 인수·합병 과정에서 **콘텐츠 투자** 촉진을 유도

※ 현재 SKB와 티브로드, LGU+와 CJ헬로 간 인수합병 논의중

-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,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**시장예측 모델 개발** 및 **시장 획정 재검토**

○ **(데이터 개방 확대)**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기업·연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, 전담 인력도 확충

-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시청자의 인터넷 반응정보를 수집하여 **콘텐츠가치**를 **분석·공개**함으로써 한류 활성화를 지원

- **스팸 데이터***를 산·학·연에 개방하여 스팸 분석·차단 기술 고도화 등 학계·통신사의 스팸대응 및 연구를 지원

*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가 신고하거나 스팸 트랩에 수집된 데이터(스팸 수신 일시, 스팸문자 내용 등)

- 긴급구조 목적의 전국 **WiFi AP DB**를 위치정보사업에 활용토록 개방

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

□ 개 요

○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관련 제도 개선 추진

- 동시에,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화되는 불법정보·음란물 유통, 사이버 폭력, 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역기능 대책 마련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

○ **(임시조치 제도 개선)** 인터넷 상 임시조치 관련 **정보게시자**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**이의제기권 신설**,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(12월)

○ **(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)** 인터넷상 비판 기능 활성화 및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* 신설 추진(12월)

* 형법(제310조)은 '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' 처벌하지 않음

②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○ **(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)**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(24시간 이내)를 위한 **심의절차 개선** 추진(방통위설치법 개정, 12월)하고, 불법 유해정보 주요 공급망*에 대한 **점검**을 **강화**

* ①웹사이트 및 SNS 운영자·광고업자 ②웹하드·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업자

- 포털·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**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부과***(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, '19.6월~)에 따른 준수여부 집중 점검(7월~)

* 신고·삭제요청 등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삭제·접속차단 조치

- 불법 도박·음란물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

○ **(웹하드 카르텔 근절)**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**주식·지분 소유를 금지**하고,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**등록요건 강화** 및 기술적조치 미이행 시 **징벌적 과징금** 도입(4분기)

- **DNA 필터링 기술 적용**(1월) 및 기술조치 **현장점검 강화**(상시)

※ DNA 필터링 미적용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(2천만원) 부과

-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웹하드 및 미등록·유사 웹하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의뢰 실시

○ **(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지원)** 학계·언론계·인터넷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**다자간협의체를 구성**(3월)하고 사업자 자율의 **가이드라인 마련**(12월)

※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수익배분 제한, 광고 후원주체 공개, 양질의 정보 우선노출(알고리즘 설계) 등 사업자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 모색

○ **(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)**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란·욕설, 과다 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**청소년보호 의무** 및 유료아이템 **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**에 대한 **전담 모니터링 신설** 및 행정지도 실시(연중)

※ 금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모니터링 실시

< 모니터링 주요 내용 >

- **미성년자 이용불가 시청등급 분류** (19세 이상 이용가능) 및 **청소년 보호**
- **실시간 이용자 신고 기능** (녹화방송 및 VOD 포함)
- **결제 오류방지 및 자동결제 고지** (휴대폰 인증, 비밀번호 인증 등 절차 설정)

○ **(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방향 재정립)**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 연구

③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

○ **(청소년 보호 강화)**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**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** 확대 추진 (법안 마련, 6월)

※ 현재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,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(43개 사이트)

-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**'사이버 안심존' 앱 보급** (1,100개교→1,500개교), 사이버 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**'스마트안심드림' 앱 보급**(42,000명 → 47,000명) 지속 **확대**

○ **(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)** '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' 종합계획에 따라 유아·청소년·성인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

- 예방위주의 교육에서 **사후 대응방법까지 포괄**하는 교육서비스 제공

< 세대별·계층별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>

유아	•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
청소년	• 초·중·고 인터넷 윤리교육 •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• 자율참여형 한국인터넷드림단
성인 / 교원	• 성인 인터넷윤리교육 • 교원 역량강화교육
취약계층	•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

※ '19년 교육인원 17만명 목표 → '17~'22년까지 누적 100만명 목표

○ **(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)** 국민이 인터넷 역기능에 경각심을 느끼고 자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**생활밀착형 홍보**와 **참여형 캠페인** 강화

- 인터넷윤리 **캠페인·공모전*** 등 개최 및 **인터넷윤리체험관** 기능 **강화**

*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선포식(3월),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(9월), 인터넷윤리 대전(12월), 언론공동캠페인(연중)

Ⅳ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1 방송의 공공성 ·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

○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중점 심사 및 방송 공정성 평가 강화,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, 재난방송 강화, 공익광고 편성 확대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

수신료 체납가산금 인하, 면제절차 간소화 등

재난·사고 발생시 터널 진입부 라디오 비상방송 실시

방송사 공익광고 편성 확대

2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

○ 미디어센터(7개→10개) 및 미디어 나눔버스(2대→4대) 확충, 마을미디어교육 확대(50개→70개 마을),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(1.5만대) 등으로 미디어 주권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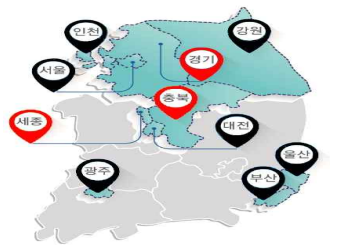

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구축 (7개→10개)

마을 미디어교육 확대 (50 개 →70개 마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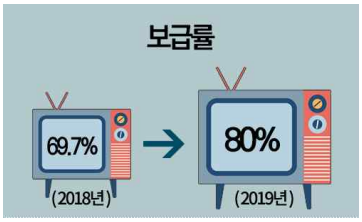

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률 80% 달성

3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

○ 「통신분쟁조정제도」 시행, 사업자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통신재난 시 장애사실 고지 의무화 추진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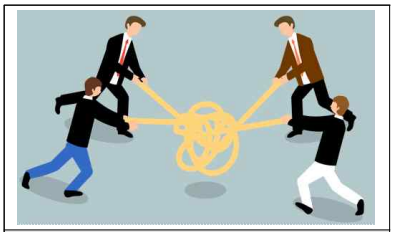

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

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

통신재난 시 사업자의 장애사실 고지 의무화

4 창작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

○ 「외주제작 가이드라인」 시행 및 외주제작비 현실화 이행점검, 제작현장 안전강화 조치 유도 등 창작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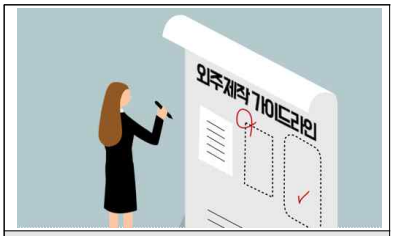

'외주제작 가이드라인' 시행

외주제작비 현실화 이행점검 (재허가조건 점검)

방송 제작현장 안전 강화 조치 확산 (방송평가 반영)

5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

○ 주요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, 망이용료 차별 해소 및 해외사업자의 불법서비스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등 역차별 해소

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

'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' 마련

해외사업자의 불법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

6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○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(24시간 이내),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주식·지분 소유 금지 등 카르텔 근절,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 등 추진

성범죄영상물 신속 심의를 위한 심의 절차 개선

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카르텔 근절

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